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9-22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4구합2135 압류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5. 3. 4.
판 결 선 고	2015. 3. 1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03. 11. 3.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(이하 '이 사건 자동차'라 한다)에 대하여 압류관리번호 B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9-22

가. 피고는 1999년경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(양도소득) 합계 18,536,840원을 납부기한 1999. 9. 30.로 정하여 부과하였다.

나. 원고가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자, 피고는 2003. 11. 3.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압류처분(이하 '이 사건 압류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다.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'2, 3년 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'고 진술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자동차에는 이미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어 배당받을 금액이 없음에도 피고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막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은 원고와 같은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,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압류처분일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피고가 2003. 11. 3.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, 원고는 늦어도 2013. 3.경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원고가 2014. 10. 8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9-22

것임이 명백하므로,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연우

판사 이혜랑

판사 김정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9-22

[별지]

목록

1. 자동차 등록번호 : C

1. 형식승인번호 : A04-1-00002-0003-1203

1. 차명 : SM3

1. 차종 : 승용 중형

1. 차대 번호 : D

1. 원동기 형식 : QG15

1. 등록 연월일 : 2003. 9. 27.

1. 최종 소유자 : 원고

1. 사용 본거지 : 세종특별자치시 E, 6호 <끝>